

'23년 영유아 돌봄시설 결핵 전파 선제 차단

- 질병청, 2023년 돌봄시설 종사자 5만 7천여명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
- 결핵환자 9명, 잠복결핵감염자 14,645명 대상 교육 및 치료연계
-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여 영유아들에게 결핵 전파를 차단하는데 기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의 종사자 약 5만 7천명에게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붙임 1 참조)

*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과 전염성이 없음

이 사업은 돌봄시설에 종사자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의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결핵균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위험이 높고 중증 결핵으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에게 결핵균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올해 처음 정부가 추진하였다.

<2023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구분	주요내용
사업목적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돌봄시설 중 검사 접근성이 낮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지원을 통해 결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23년 검진대상 및 목표인원 수	①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②산후조리원, ③어린이집, ④유치원, ⑤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420,100명 중 중 검진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임시일용직근로자*) 40,929명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⑥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16,602명 (예산 절약 시, 추가 검진 대상)
사업내용	[검진]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검진결과 양성자 흉부X선 (활동성 결핵 배제) [치료]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권고(보건소 치료지원 또는 치료의료기관 연계)

금번 사업으로 총 56,804명의 검진을 지원하여, 당초 목표하였던 검진 인원 41,000명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임시일용직 근로자 4명 중 3명, 유치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9명의 검진을 지원한 셈이다.

검진 결과 전체 검진자의 25.8%에 해당하는 14,645명의 잠복결핵감염자와 9명의 활동성 결핵 환자를 발견하였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하여 결핵 발병 전 예방치료로 발병을 예방하거나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가입 이후 27년 만에 최하위를 면했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핵 퇴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복결핵감염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선제적으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붙임 2 참조)

- <붙임> 1. ‘돌봄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개요
 2.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
 3. 잠복결핵감염 홍보자료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호용 (043-719-7310)
		담당자	사무관	박광자 (043-719-7316)
	책임연구원		김가희 (043-719-7927)	
	선임연구원		박규리 (043-719-7321)	
	결핵정책과			

□ **사업 목적**

-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돌봄시설 중 검사 접근성이 낮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지원을 통해 결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결핵 발병시 파급력이 큰 신생아 및 영유아 등 돌봄시설^① 종사자 중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②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①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②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자에게 활동성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흉부 X선 검사
- 최종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치료 또는 결핵 예방관리 지원

□ **사업 현황**

- 총 56,804명 검진 실시,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14,654명(양성률 25.8%) 확인하여 치료 및 예방관리 교육, 9명의 결핵환자 발견

< '23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현황 >

'23년 12월 20일 기준 잠정통계 / 단위: 명, (%)

검진 목표	검진현황			
	검사자	양성자 ^①	잠복결핵 감염자 ^②	결핵 환자 ^③
41,000	56,804 (138.5)	14,654 (25.8)	14,645 (25.8)	9 (0.02)

①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② 잠복결핵감염 양성인 사람 중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하여 활동성결핵이 배제된 사람

③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결핵을 진단받은 사람

□ **잠복결핵감염 개요**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

[참고]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 유무	전혀 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발생 * 초기 무증상인 경우도 있음
전염성 여부	전혀 없음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중 전파
신고 의무	해당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 **잠복결핵감염 검진**

- (접촉자 검진)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대상자는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 *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접촉자, 집단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 (의무검진 대상) 결핵 발생위험과 발생 시 집단내 전파위험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를 「결핵예방법」에서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잠복결핵감염 치료**

- (치료 대상) 잠복결핵감염은 감염성질환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되,
 - 다만,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면역저하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치료 시행 권고

○(치료 방법)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실시,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 실시

*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 9개월(9H) 요법 중 선택

○(치료비 지원)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 재정)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

* 잠복결핵감염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단, 결핵발병 고위험 성인 및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리플렛

* 결핵제로(<http://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 > 홍보자료 > “2022년 잠복결핵감염 사업 홍보물”

잠복결핵감염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면?



결핵제로 tbzero.kdca.go.kr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뢰기관 및 국가결핵관리정책을 안내하고 있으며, 홍보·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및 가까운 보건소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

결핵 예방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침, 이렇게 지켜주세요!



기침, 재채기 할 땐 손이 아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휴지가 없을 시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기침, 재채기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고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기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진행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하기

잠복결핵 감염 + 바로알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무료!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 시 83% 결핵 예방

잠복결핵감염이란?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핵	잠복결핵감염
증상 유무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	증상 없음
전염성 유무	기침,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전염성 없음
환자 여부	환자	환자 아님
치료 필요성	반드시 치료 필요	치료 권고
검사 방법	흉부X선 검사, 객담검사	면역학적 검사 (TST, IGRAs)*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2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 하루 평균 63명의 결핵환자 발생

2년 이내

5%

2년 이후

5%



결핵균 감염 시 총 10%정도에서 결핵으로 발병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약 5%가 결핵으로 발병하고, 그 이후 평생에 걸쳐 약 5% 더 발병하여 총 10%정도에서 결핵으로 발병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하면 83% 결핵 예방

3



잠복결핵감염 양성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활동성 결핵 발생률을 약 83% 낮출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이라면 무료로 치료하기
*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의사 상담에 따라 세 가지 요법 중 한 가지 선택

9개월

이소니아지드

4개월

리팜핀

3개월

이소니아지드 + 리팜핀



무료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무료!

4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무료이며,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산정특례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단, 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예비(산발)급여, 상급병실료(2~3인실) 및 본인부담률이 필요로 정해진 항목은 제외



면제 면제